

출판부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루터대학교 출판부(이하“출판부”라 한다.)는 학술 연구실적 및 학내의 간행물을 출판함으로써 학문적 성과와 학사업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설치) 출판부는 루터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교재 및 학술도서의 출판
2. 교내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
3. 영상, 음향, 전자 저작물 등
4. 간행도서의 관리 및 판매

제4조(조직) ① 출판부는 부장을 둔다.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부장은 출판부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출판부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출판) ① 출판부는 본교의 간행물과 교직원의 저작물 등 교내의 출판물과, 필요하다면 교외의 간행물과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다.

② 저작물의 출판은 출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출판계약 및 인세) 출판부가 출판물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자와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정) 출판부의 재정은 교비 지원금, 출판수익금, 외부 기부금,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.

제8조(사업계획) 출판부장은 매 학년도 개시 이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구성) ① 출판부의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출판부장이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출판부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출판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출판부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3. 출판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5-18-1 출판부 운영 규정

4. 교재 및 학술도서의 출판과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
5. 기타 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